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2월 6일, 양부남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7.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  
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양부남 의원)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 선거운동 방식 및 제재 적용 등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함.

또한, 위탁선거 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신협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위탁을 법에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개정, 안 제78조제7항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13조 및 제14조 등)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대상 규정(안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변경하였음.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하여 의무위탁 대상 공공단체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로 하고 있고,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한해 동법상 선거운동 및 벌칙규정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중앙회를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선거운동규제 및 벌칙 등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봄.

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 및 동시이사장 선거일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규정하는 한편, 동시조합장 및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는 한편,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은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14일로 정한 것은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위탁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용협동조합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3월 중 첫 번째 수요일)과 다르게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의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추가(안 제24조)

현행법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한하여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및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의무위탁 대상 추가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등(안 제 35조 및 제36조)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도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 등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2.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현행 2일에서 3일까지로 변경

현행법은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록번호, 투표소의 위치 및 투표 가능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안내문의 짧은 발송기한

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선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을 현행 2일에서 3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 제작·발송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짐.

한편, 현행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66조제12호와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는 제66조제2항12호와 제66조제2항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의 오기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3. 위탁선거 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적용 제외의 명확화 등

#### 가. 위탁선거 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근거 마련(안 제78조)

현행법 제78조는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제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 등 위탁선거 관련 기본적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되, 사무편람 제·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경우 이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 일정기간(60일에서 10일까지)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된 경비는 각급(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잔액을 위탁단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탁선거 경비는 위탁단체가 지급한 경비로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그 잔액을 다시 해당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 경비를 국가예산으로 편입할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 경비의 편성·집행·정산 비효율 등의 문제로 현재 까지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된 지적이 있었음.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국회 시정요구》

| 구분              | 시정요구사항 (유형)                                                                                                                                                                                                  |
|-----------------|--------------------------------------------------------------------------------------------------------------------------------------------------------------------------------------------------------------|
| 2023<br>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 2021<br>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
| 2019<br>회계연도 결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br>○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

이에 개정안은 위탁선거 경비를 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적용을 명

시하는 입법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재정 통제를 위한 원칙인 예산총계주의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위탁선거 경비 산출기준 마련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78조의제1항)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위탁선거 경비 산출의 기준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은 그 편성단계부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물량·단가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으나, 현행 위탁선거 경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외부통제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은 현재 외부통제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칙으로만 정하게 되어있는 위탁선거 경비 산출기준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탁선거 경비 산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위탁선거 경비의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78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탁선거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녹색자금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위탁선거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4. 위탁선거 운동의 제한·중지 규정 신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 및 이사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 비율이 높아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위탁선거 운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에 따른 경비 및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위탁선거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범수)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